

Deloitte.



2023.11 | 제4호

기업지배기구 *Insights*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I. 전문가 기고

- ①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 • 04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유승원 교수
- ②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의무 • 08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정애 교수
- ③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요 및 내부통제 방향 • 11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김세정 Senior Manager

II. CCG 아젠다

- ① 이사회와 전환 이니셔티브 :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다 • 16
-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 19

III. 데이터 포인트

- ① KOSPI 200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36

IV. 주요 규제 동향

-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43
- ②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진행 실태분석 결과 • 49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 53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 (23.11.15~12.5) -

V. FAQ

- ① 금융사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58
- ② 사외이사의 책임 • 60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 전문가 기고 ①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유승원 교수

1. 신외부감사법의 제정과 내용

우리나라에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부감사법')은 기업의 경영활동 및 감사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외부감사법의 주요 조항으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인 등록제도, 감사인 책임 강화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권한 명시 등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외부감사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일어난 사례는 2000년대 초반 엔론 사태 이후 미국에서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법)이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SOX법도 회계 부정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경험한 후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 및 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와 경영자 보고서 요구, 감사위원회의 책임 확대,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공시기준의 강화, 내부자 거래의 제한과 증권사기의 방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감사 표준과 규정의 설정/감독, 감사인 등록/감독을 담당하는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 신설, 기업 부정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외부감사법도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일부 기업의 회계부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기능이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외부감사법은 SOX법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같은 포괄적인 감사인 독립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었다. 신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게 6년간의 외부감사인 자율 선임 이후에 반드시 3년 동안은 감독기관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과거 경영 및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직권지정제도를 모든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로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피감사법인과 외부감사인 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I. 전문가 기고 ①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

둘째,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감사시간에서 피감사법인의 특성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감사시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저가의 감사보수/감사시간을 투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감사의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에도 과거 외부감사인의 단순 검토 대상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으로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대표이사가 주총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회계정보 투명성의 시발점이 되는 기업의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상의 제도 이외에도 상장사 외부감사인의 감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사 감사인은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감사)로 변경하고, 외부감사인 감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 보장과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었다.

2. 신외부감사법의 감사품질에의 영향

신외부감사법의 중요 목적은 회계의 투명성과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을 높이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이 감사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특히 신외부감사법의 변화 중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감사인 지정이 예정된 기업의 경우 지정 이전에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여 지정에 대비한 회계투명성의 증가가 있었으며(김정훈 등, 2020), 지정 이후 지정감사인의 감사시간 및 감사비용이 증가하는(김현정, 유승원, 2022; 김우진 등, 2022) 등 지정을 통해 감사품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지정 이후에는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가 없고 도리어 실물이익조정이 증가하여 이익조정 방식의 변화만 가져온다는 보고도 있다(손혁 등, 2022).

둘째, 표준감사시간제도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이후 재량적 발생액으로 평가된 감사품질의 증가가 보고되었지만(조연주 외, 2022) 시장의 경쟁 상태 등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민우, 정기위, 2020).

셋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효과는 전반적으로 혼재되어 효과가 없다는 결과도 있고(김태중 등, 2021)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등 감사품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다(정석우 등, 2023).

I. 전문가 기고 ①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

3. 신외부감사법의 효익과 비용

신외부감사법은 도입 이후 감사시간, 감사보수, 시간당 감사보수가 증가하며,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증가하고, 감사조정이 증가하는 등의 전반적인 감사품질의 향상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정석우 등 2023). 즉, 신외부감사법의 효익은 감사품질의 제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의 증가로 회계정보와 기업가치와의 연관성 증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 주식유동성 증대 및 자본조달비용의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시장이 회계정보 및 감사품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정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실현될 효익이며, 단기적으로 기업이나 시장참여자가 확인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신외부감사법의 도입에 따라 기업은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용 비용 증가, 표준감사시간 및 지정감사인 제도로 인한 감사비용의 증가, 기업과 감사인 간의 갈등 증가, 전 당기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증가 등 피감사법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비용의 증가가 존재한다. 특히,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증대 및 시장의 신뢰성 증가 등 장기적인 효익에 비해 기업이 단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게 된다. 다만 단기적인 효익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외부감사법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지속적으로 신외부감사법의 효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물론 최근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및 표준감사시간의 적용 등과 관련한 일부 개선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효익과 비용의 평가는 제도 시행 3년만에 확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며,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며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둘째, 이러한 평가와 개선의 과정에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이 시장참여자이다. 신외부감사법의 제정 목적이 회계투명성의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로 건전한 자본시장을 유지하고 시장참여자를 보호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참여자의 입장에서 효익과 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참여자의 입장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시장참여자의 신뢰성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외부감사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에 걸맞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신외부감사법이 기업에 정착하여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I. 전문가 기고 ①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

[참고문헌]

김우진, 김세희, 백복현, 이우중. (2022).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감사인 지정의 효과를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64(3).

김정훈, 오용락, 이유선, 노희천. (2020). 기간별 분석을 통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감사품질 개선 효과 추정; 세무학연구. 21(5).

김태중, 유용근, 이상혁.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재무제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30(6).

김현정, 유승원 (2022).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31(1).

손혁, 조호철, 정재경. (2022).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품질을 제고하는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64(1).

이민우, 정기위. (2020). 감사환경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과 감사품질 개선 효과: 감사시장의 경쟁강도와 비감사보수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9(3).

정석우, 황문호, 오명전, 최승욱. (2023). 한국회계학회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 발표 자료.

조연주, 김민희, 전규안. (2022).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7(2).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콘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I. 전문가 기고 ②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의무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정애 교수

1. 사실관계

甲은 A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A 회사는 B 외국법인과 B 법인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甲은 A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C 회사의 이사 또는 실질주주로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C 회사는 A 회사와 B 외국법인간 위 독점판매계약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부터 B 법인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위 계약 기간 종료 후 B 법인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B 법인의 한국 공식총판으로서 위 제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그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영업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A 회사는 위와 같이 사업기회를 상실한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해산하였고, 이에 A 회사의 주주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甲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A 회사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A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A 회사가 甲의 경업행위와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입은 손해는 A 회사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 상당이다. 이 때 A 회사의 매출액 감소분은 C 회사가 판매한 B 법인 제품의 매출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C 회사는 甲이 유용한 A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 영업권 속에는 C 회사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여 형성한 가치 외에 甲의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A 회사가 상실한 B 법인과와의 독점판매계약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 위 사업 양도 후 수개월이 지나 A 회사가 해산하였다고 하여 해산 전에 A 회사가 입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지도 않으므로, C 회사가 받은 양도대금 중 C 회사가 A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수년간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A 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A 회사의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다16191 판결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 전문가 기고 ②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의무

3.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

이사는 회사와 민법상 위임 관계로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이하 상법 법명은 생략함). 또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제382조의3)하는데, 상법은 경업금지의무(제397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무(제397조의2, 이하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라 함),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제398조)를 충실의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경업금지의무와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하에서는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에 관해서만 살펴보겠다.

제397조의2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는 2011년 개정상법에 신설된 것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당시 제정취지는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회사기회 유용금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사의 관련 위법행위에 관한 책임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I. 전문가 기고 ②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의무

통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충실의무 위반, 즉 경업금지의무,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는 사업상 위험의 인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 등 위반은 사업상 위험의 인수와 상관없이 이사의 사익추구를 면책하는 면이 크므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4. 판결의 의의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가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되기 전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자. 글로비스 사건(서울중앙지법 2011. 2. 25. 선고 2008가합47881)은 글로비스의 설립이 현대자동차에 현존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았고, 신세계백화점 사건(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은 회사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다더라도 그 이어나 이사회 승인의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당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선관주의 내지 충실의무를 통해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결국 '사업기회'라는 개념을 협의로 해석하고 이사의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로 이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상 판결²⁾은 상법에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한 후 이사에게 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첫 판결로써 앞으로 법원은 '회사기회', '이익가능성'의 개념을 광의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도 배제함으로써 동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콘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I. 전문가 기고 ③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요 및 내부통제 방향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김세정 Senior Manager

1. 책무구조도 의의

책무구조도는 2016년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¹⁾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내부통제체제로, 고위경영진 인증제도(SMCR: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e Regime)를 구성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발견된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의 취약점 보완 및 회사법 상의 성공촉진의무²⁾로 인한 과도한 고위험 촉진의 기업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경영진 책임 명문화 및 인증제도(SMCR)의 일부로, 경영진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주어진 통제 영역에서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이 예방에 상당한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영국의 회사법에서 명시한 이사 선관의무³⁾에 더하여 실효성 있는 회사의 내부통제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책무구조도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와 "명세서(Statement of Responsibilities)"로 구성되어 있다. 책임지도는 내부통제 지배구조에 대한 조직도 및 경영진 별 책임을 개괄적으로 표현하며, 명세서는 경영진 별 내부통제 책임과 책임이행 조치활동을 상세 기술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 실제 수행 업무 기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구분·확정하고, ▶ 책임 범위 내 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의 상당한 조치 이행 등을 감안하여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제재 또는 면책을 골자로 한다⁴⁾.

선진적으로 이를 도입하고 시행한 영국의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 유형 별로 고위 임원진의 책임 범위를 정한 책임지도 및 명세서 등을 감독당국인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대상으로는 금융회사의 주요 기능별 담당 임원으로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리스크관리담당자(CRO), 최고기술책임자(CTO), 업무집행이사, 내부감사본부장, 소비자보호책임자, 준법감시인, 그룹부문장 등이 포함된다.

2. 국내 도입 배경

계속되는 금융권 내 직원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사기, 도난·피탈 등으로 비위 행위로, 최근 5년간 금융 사고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⁵⁾.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였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 원)이 전체 피해액의 68%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횡령·유용(2043억 원), 배임(1153억 원) 등의 순으로 피해가 파악되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 발 금융사고는 금융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기에,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⁶⁾.

1) FSMA 2000: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2) Companies Act 2006, Section 172 "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3) Companies Act 2006, Section 174 "Duty to exercise reasonable care, skill and diligence"

4) 자본시장 연구원, 내부통제 관련 해외당국 운영사례, 2022

5) 조선일보, 금융사고 피해액 5년 8개월간 1조 넘어, 2023.09.12 | 퍼블릭뉴스,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 1조원 넘어... 도덕적 해이 심각, 2023.09.12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3.06.22

I. 전문가 기고 ③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요 및 내부통제 방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015년 제정부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의 마련을 명시하고 있고⁷⁾, 이 법의 제정과 함께 금융권 전반에서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다만, 내부통제의 구축 및 운영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점, 그리고 경영진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 내부통제 수준이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 등, 금융권 내 실제 운영 및 그 효과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회사가 단기 성과를 중시할수록 내부통제의 “실질”보다는 “형식”에만 치우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금융회사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준수를 도모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2022년 6월, 금융권 내 책임경영 확산을 목표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부통제 개선 방안 도입을 제시하였다⁸⁾.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임원 별 내부통제 책무(responsibility)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금융회사의 특성 및 경영 여건 하에 자율적인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을 하게 함에 있다. 이를 통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는 목적이다⁹⁾.

3.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 의무 및 대응 과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서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¹⁰⁾이 발의되어 법안 심사 중에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이하 “대표이사등”)는 임원의 직책 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 작성하여야 한다.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하되, 복수로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에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¹¹⁾.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되어야 하며, 대표이사등은 금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과 더불어 함께 개정된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2조의2 신설)

나.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안 제30조의2 신설, 안 제30조의4 신설)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14) 제 24조 내부통제 기준

8,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3.06.22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23.09.11)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3.06.22

I. 전문가 기고 3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요 및 내부통제 방향

다.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안 제30조의3 신설)

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향후 개정 시행 예정인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무구조도 작성, 적극적 자격요건, 인수인계 절차, 내부통제 상당한 주의 관리의무, 관리 시스템 요건 정의 등 전반적인 현재의 내부통제체계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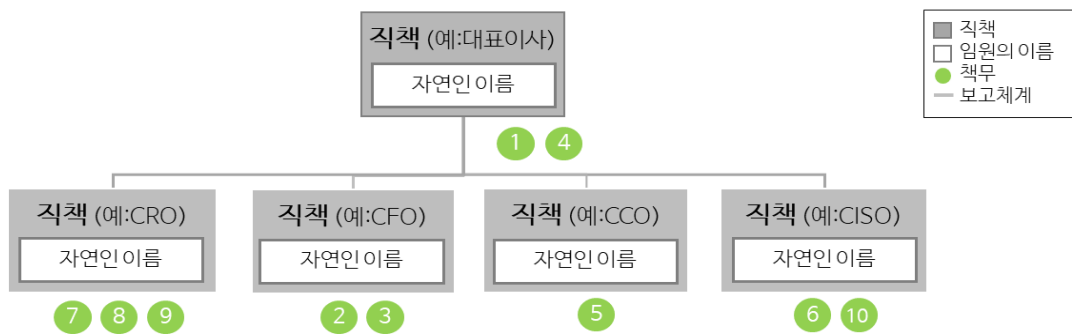
금융회사 추진 과제	금융회사 세부추진 과제
책무구조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 책무구조도 설계 •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 설계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적격성 검증 절차 마련 •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실효성 강화
임원의 인수인계 절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마련
임원의 내부통제 등 상당한 주의를 다하는 관리의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경감 필요사항 및 관리조치 수립 •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기준 마련
임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 구축/개발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강화된 내부통제 감독 및 감시의무 부과체계 마련

I. 전문가 기고 ③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요 및 내부통제 방향

[별첨]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개념 예시¹²⁾

<그림1> 책무구조도의 개념도



- 각 임원은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극적 자격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
 -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현행 소극적 결격요건 외에 책무수행의 적극적 요건도 신설
 - 금융회사는 임원의 신규 선임시 뿐만 아니라, 기존 임원의 책무구조도상 직책 변경시에도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의무

구분	현행	개선
임원의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 결격요건만 열거 (*사외이사만 적극적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극적 자격요건 추가
자격요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신규선임 시에만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신규선임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 기선임된 자의 직책변경 시에도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영국에서는 내부통제제도와 임원적격성 심사제도를 면밀히 연계하여 운영

12)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2023.06

I. 전문가 기고 ③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요 및 내부통제 방향

-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CEO)가 마련·책무구조도상 CEO의 책무에 “책무구조도 작성” 포함 예정
 - 대표이사는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등 작성 미흡,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 거짓작성에 대해 책임
 - 한 명의 임원이 다수의 직책을 수행할 수 이는 있으나, 회사내 모든 주요 책무를 적용대상 임원에 대해 “중복없이, 빈틈없이” 배분 필요
 - 책무구조도는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
 - 책무구조도는 최초 작성 및 주요사항 변경시 감독당국에 제출
 - (예) 인사로 직책 담당 임원이 변경되거나, 영위업무 변화로 책무가 신설·폐지되는 경우 등
 - 감독당국으로부터 그 적정성 여부를 승인 받는 것은 아니나 감독당국은 필요시 시정요구 가능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콘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II. CCG 아젠다 ①

이사회와 전환 이니셔티브 :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다¹⁾

요약

- 기업의 전환 이니셔티브는 기업운영 및 조직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사회는 모든 전환 이니셔티브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마진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으로는 추적 및 보고, 데이터 가용성, 리더십 등이 언급되었으며, 마진개선 장벽으로는 인재 부족, 인플레이션, 공급망 제약 등이 지적됨
- 공식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이사회에게 이미 가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잠재적 장벽이 존재하지만, 회사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사회가 전환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함
- 이사회는 전략 초기 수립을 넘어 대규모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걸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법임

기업의 전환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이는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이하 "M&A"), 구조조정, 자산 매각 및 인력 재구성 등 다방면의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유형들은 목표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업운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그 형태와 무관하게 전략 수립에서부터 실행 모니터링,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환 이니셔티브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및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조직 전환 프로젝트에 이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사들은 이렇게 중요하고 대규모 이니셔티브에 얼마나 자주,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을까요?

2021년 Deloitte와 미국기업이사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rporate Directors, 이하 "NACD")가 실시한 이사회 M&A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참여가 일반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응답자(95%)는 이사가 초기, 거래 전 M&A 전략 수립에 참여한다고 응답했지만, 단지 23%만이 M&A 프로젝트의 후기 단계에 이사회가 참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 Deloitte 글로벌, 「Boards and Transformation Initiatives: Strategy Is Just the Beginning」, 2023

II. CCG 아젠다 ①

이사회와 전환 이니셔티브: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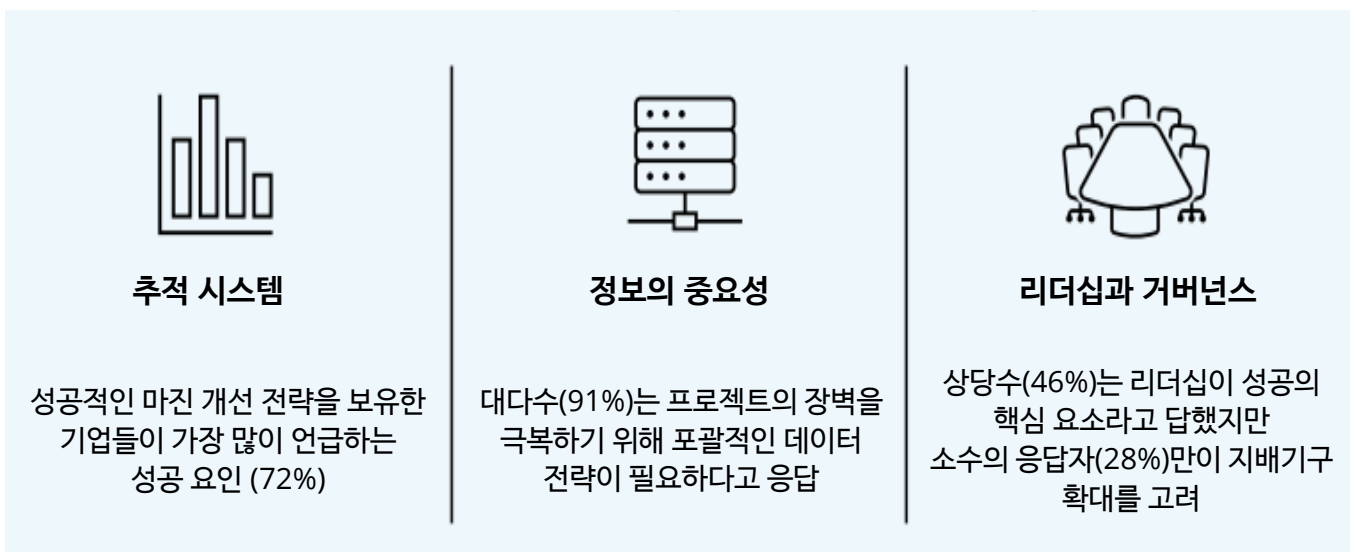
마진 개선 사례

마진 개선 프로그램은 현재의 경제적인 압박을 고려할 때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전환 이니셔티브 중 하나입니다. 마진 개선은 성장, 유동성, 비용 절감 및 인재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조직의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전환 이니셔티브와 마찬가지로, 마진 개선 프로그램의 정확한 세부 사항과 규모는 업계별로 다양합니다.

최근 Deloitte 글로벌이 발표한 마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약 300명의 경영진은 인재 부족(48%), 인플레이션(46%), 공급망 제약(38%)을 이러한 전환 전략 분야에서의 장벽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응답자들은 추적 및 보고(72%), 데이터 가용성(62%), 리더십(46%)을 성공의 핵심 요소로 응답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영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하지만, 경영진과 이사회 리더십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진 개선 프로그램이 직면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민첩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성공률은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마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70%의 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되고, 치밀하게 고안된 전략조차도 공급업체의 문제, 가격 상승 및 인재 부족과 같은 이슈에 의해 좌절될 수 있습니다. 전환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검토를 통해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전략을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선제적인 대응은 목표 실현 가능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마진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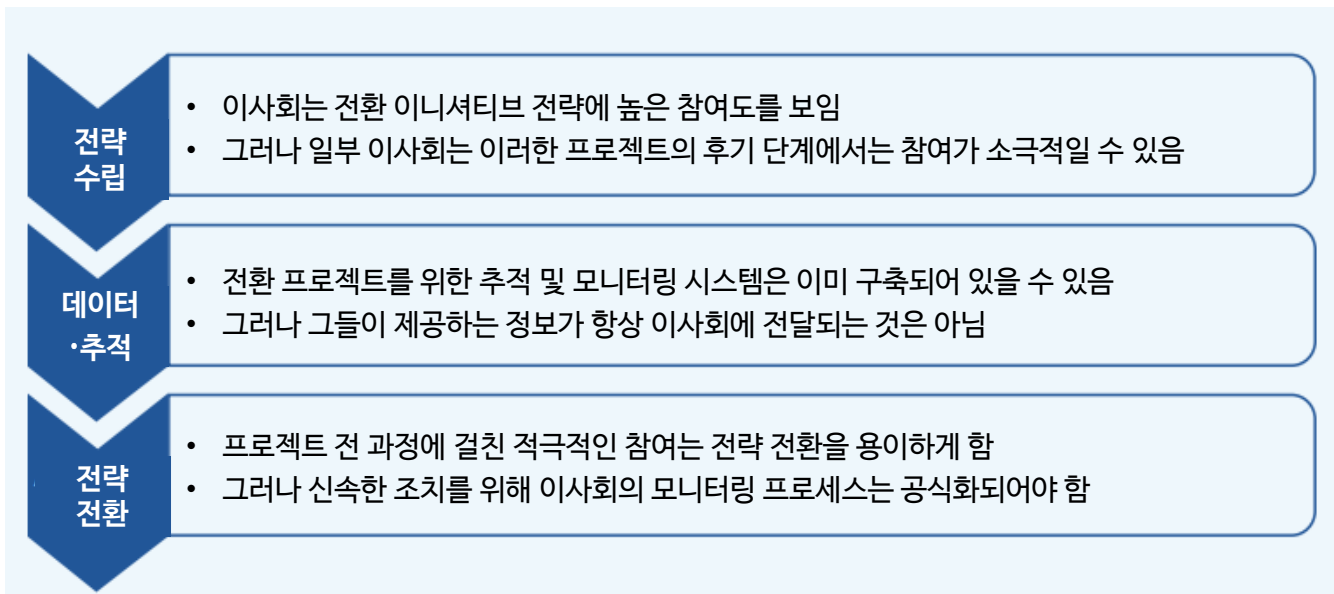
II. CCG 아젠다 ①

이사회와 전환 이니셔티브 :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환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사회 모니터링 역할

Deloitte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경우 전환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이사회에 공식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보고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환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사회 참여를 더욱 촉진하거나 강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기업마다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미 가용한 정보를 이사진에게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이사회 참여의 이점과 잠재적 장벽



이사회 고려사항

이사회 전략 초기 수립을 넘어 대규모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걸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회복탄력성 (Resiliency)을 강화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립 후 잊어버리기” 모드를 우려하는 이사회라면, 전환 이니셔티브를 모니터링하는 기존 프로세스를 재평가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범위한 프로세스를 갖춘 이사회라 할지라도, 이 주제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이사회 감독 및 모니터링이 진행 중인 전환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까? 그렇다면, 필요할 때 신속한 전략 전환(또는 목표 조정)이 가능할 만큼 모니터링이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프로세스가 없다면 대규모 조직 변화에 관한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공식화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요약

- 국내 기업은 여전히 부정 또는 횡령과 관련한 자금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적 이슈로도 제기되고 있는 기업의 '부정'과 관련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주체중의 하나인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에 대해 논하고자 함
- 기존 외부감사법 상에서 제시된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에 더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개선으로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가 구체화되는 계기를 마련함
- 감사(위원회)는 실제 횡령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법과 미비점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설계와 실질적인 운용, 주기적·비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음
- 회계부정 예방 차원의 대응방향에서 'Tone at the top'의 일환으로 내부신고제도의 성실한 운영과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대한 감독이 강조됨
- 감사(위원회)는 부정이 발견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면책되기 어려운 현실로 회계부정에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회계부정 등의 징후를 모니터링 하는 최상위 지배기구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논의 배경

- 하기의 언론기사 헤드라인에서 언급하는 사항처럼 기업에서 부정 또는 횡령 관련 사건들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자금사고는 회사의 규모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여부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음
 - 검찰, '2,215억 횡령' A사 본사 압수수색 (2022년 1월 12일)
 - '246억 횡령' B사 직원, 가상화폐 5억 은닉...검찰 환수 (2022년 4월 29일)
 - 검찰 115억원 횡령 C사 직원 징역 15년 구형 (2022년 5월 10일)
 - D사 직원 3명, 35억 횡령해 도박-주식투자 (2022년 5월 18일)
 - 회삿돈 2백억 원 빼돌려 호화생활...E사 전 대표 구속 기소 (2023년 8월 8일)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기업의 '부정'과 관련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주체 중의 하나인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에 대해 논하고자 함

'부정'의 특성 및 '부정'에 취약한 기업유형

- '회계감사기준 240'에서는 부정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표 1> 부정의 특성

구분	내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은 광범위한 법률적 개념이지만, 감사인은 감사기준의 목적상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에 관심을 둔다. 감사인에게 관련성이 있는 의도적 왜곡표시에는 두 가지 유형, 즉 부정한 재무보고에 의한 왜곡표시와 자산의 횡령에 의한 왜곡표시가 있다. 감사인은 부정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고, 드물게는 이를 식별할 수도 있으나, 부정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부정과 오류를 구별하는 요소는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기초행위가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여부이다.

부정 발생의 3요소

- 부정은 기회(Opportunity), 압력(Pressure) 또는 유인(Incentive)과 합리화(Rationalization)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발생하게 됨
 - 최근에는 부정을 저지르는 개인의 능력이 부각되고 있으나, 부정을 실제 실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기회'와 '개인의 능력'은 위험평가 및 예방통제와 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될 수 있음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표 2> 부정발생의 3요소와 평가시 고려사항¹⁾

구분	내용	예시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위험 평가 시 취약한 통제활동 등으로 인해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사용·처분, 재무보고기록의 변경, 기타 부적절한 행위 등 부정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통제 미흡, 비효과적인 경영진의 모니터링, 업무분장의 미흡 등
압력 또는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압력(pressure)과 유인(incentive)으로 인한 부정의 발생가능성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유의적인 성과보상의 존재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위험 평가 시 임직원이 어떻게 부적절한 행위에 연관되는지와 어떻게 부적절한 행위를 정당화하는지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윤리의식, 관행, 불공평한 성과보상, 낮은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 부정리스크에 취약한 기업의 유형은 5가지 유형으로 정리되며²⁾ 이러한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비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임

- 내부감사기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 내부감사기구(또는 본사)로부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법인 (해외 자회사 또는 지점을 다수 보유)
- 투자/재무활동 관련 현금흐름이 잦고 법인 내 대규모 유보 자금을 보유하는 법인
- 기업 규모에 비하여 회계/자금 관련 권한이 소수의 인원에 집중 된 법인
- 영업활동이 활발하나 대규모 매입/매출이 단순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법인

1) Cressey, 「기업부정이론」, 1953

2) ACFE (부정조사전문가협회), 「Occupational Fraud 2022: a report to the nation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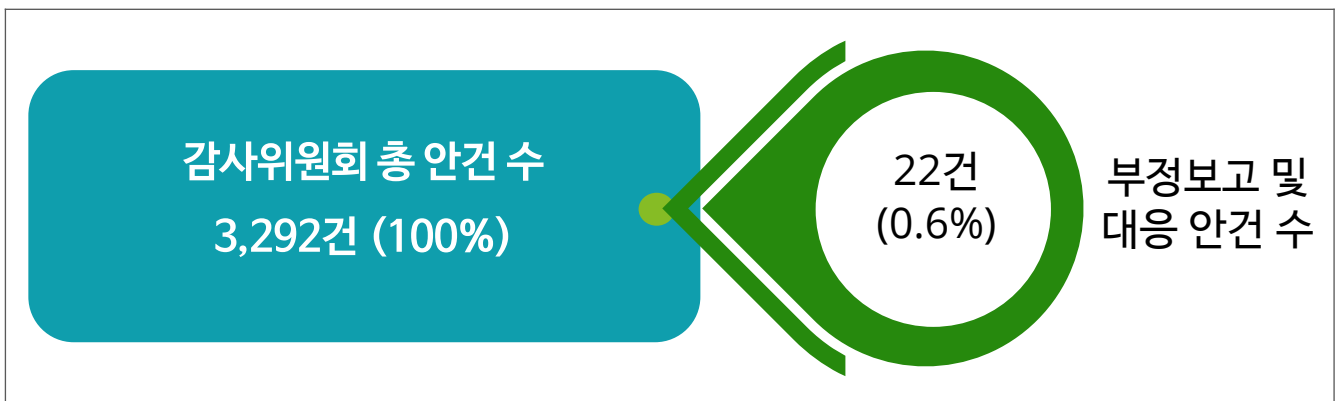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KOSPI 200 기업의 '부정' 안건 처리 현황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의 '부정' 안건 처리 비중은 0.6%(22건)에 불과하였음
 - 기업의 '부정'이 전체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많지 않고, '부정'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낮은 비중임

<그림 1> FY2022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의 부정보고 및 대응 안건 비중³⁾



<표 3> 부정관련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명 예시⁴⁾

구분	예시
A사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00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보고사항 발생의 건
B사	• 부정위험 평가 및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의 건
C사	• 보고사항1: 외부전문가의 조사 결과 보고의 건
D사	• E사의 계열사 금융사고 조사결과 보고
E사	• 소수주주의 이사들에 대한 소제기 청구 의결(안)
F사	• 00년 0분기 내부신고제도 신고현황 보고의 건

3.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정보를 기준으로 함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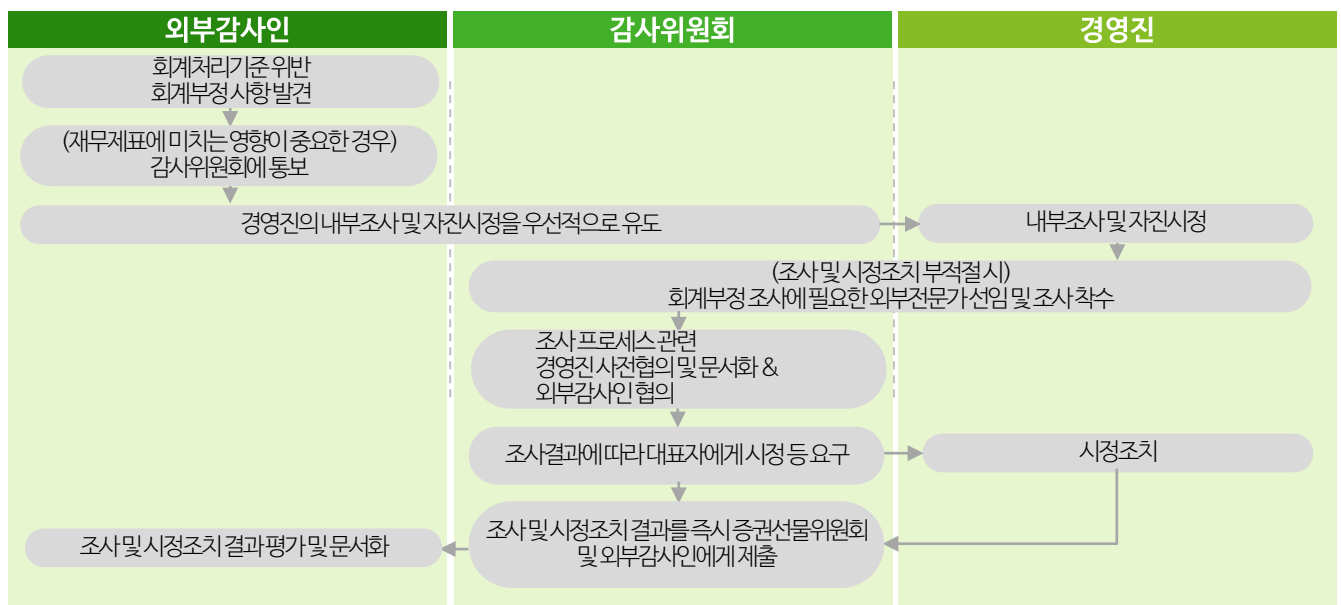
외부감사법 상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

- 외부감사법 상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부정행위 발견 사실과 보고 발견 주체에 따른 보고 등의 진행은 다음의 3가지 상황이 언급되어 있으며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게 됨

<표 4> 외부감사법 상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5)

구분	내용	대응절차
CASE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의 직무수행 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은 부정행위 발견 시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 추가적으로, 외부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수행
CASE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외부감사인에 통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CASE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은 해당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 감사위원회는 하기 <그림 2> 금융감독당국 가이드라인 절차를 통해 실무절차를 수행

<그림 2> 외부감사법 상 감사위원회 중심의 회계부정 조사 프로세스 6)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6) 금융위원회,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12.24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개선

- '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도입된 회계부정 조사제도는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2월)하여 운영되어 옴
-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 정착되고 있으나,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표 5>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항목 7)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회계부정 통보대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통보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 포함함 • 50억원 이상 8)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인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함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사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 9)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함
조사시정조치 결과 포함사항 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에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조사기간 등을 추가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함

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2023.07.17

8)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 (외감규정 제27조 제7항 제4호)

9) 예시: ①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중속회사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③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 특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회계법인, 법무법인 또는 디지털포렌식 기관 포함)를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함을 강조함

<표 6> 내부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 예시¹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 연루된 회계부정 •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과 관련된 회계부정(목표이익 달성 등) • 상장(IPO포함) 또는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의 회계부정 •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된 회계부정 •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 외부감사인 감사 방해 행위(문서 위조/ 훼손 또는 거짓 진술/고의 자료 미제출 등)

-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며, 조사의 모든 단계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함
 -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경영진과 사전협의 후 관련 내용을 문서화
 -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
 -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 통보
 -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함
 - 회사에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 충분성 등을 평가하고 문서화 해야함

<표 7>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예시¹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시기 및 통보내용 •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기간 •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10, 1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2023.07.17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자금사고의 기법과 대응방향

- 실제 횡령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법과 미비점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설계와 실질적인 운용, 주기적/비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음

(1) 회계담당자 또는 자금담당자 자금사고 유형 및 징후 포착

- 회계담당자 또는 자금담당자의 자금사고는 서류조작 및 인감도용, 의도적 회계처리 수정 또는 전표조작 및 미처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표 8> 회계담당자 또는 자금담당자의 자금사고 유형¹²⁾

구분	설명
서류조작 및 인감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출금에 대한 승인을 위해 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계약서를 증빙으로 첨부 • 인감을 도용하여 부외 차입금을 발생시켜 자금 횡령
의도적 회계처리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차손익, 고용지원금, 카드캐쉬백 등 비경상적인 이익 미계상 또는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장기미지급금을 지급 처리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유출 • 가공채무 상환 또는 가공자산 취득을 통해 횡령자의 계좌로 자금유출 (은행 및 원장 적요에는 '거래처명' 기재)
전표조작 및 미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 없이 자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된 전표 금액 조작 • 회계처리 없이 회사보유예금 유출 후 잔고증명서 위조

- 자금사고의 징후는 다음의 4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포착이 가능함
 - 자금관련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수행
 - 상대계정 분석 시 특이전표에 대한 증빙 확인¹³⁾
 - 삭제 및 수정전표 이력 분석 및 담당자별 승인권한 분석¹⁴⁾
 - 비정기적으로 은행거래명세서를 징구하여 잔고대사

12)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웨비나,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 임규동 파트너」, 2023.11

13) 매입채무 생성 시 상대계정이 원재료 등이 아닌 경우, 매출채권 상계 시 상대계정이 현금인 아닌 경우

14) 매입채무 전표의 생성/수정자가 구매팀이 아닌 경우 승인된 전표 수정 시, 전표수정자가 수정전표 승인 권한 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2) 구매담당자 또는 영업담당자 자금사고 유형 및 징후 포착

- 구매담당자 또는 영업담당자의 경우 개인계좌 입금, 판촉제품 재판매, 거래처와 공모 또는 서류조작의 유형으로 자금사고가 나타날 수 있음

<표 9> 구매담당자 또는 영업담당자의 자금사고 유형 ¹⁵⁾

구분	설명
개인계좌 입금	• 매출채권을 개인계좌로 수령 후 회사에 입금하지 않거나 지연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유출
판촉제품 재판매	• 추가로 받은 판촉제품을 거래업체에 몰래 되팔아 자금유출
거래처와 공모	• 구매 담당자의 뇌물,수수 등 kickback
서류조작	• 횡령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조회서를 위조하여 횡령사실 은폐

- 자금사고의 징후는 나타나며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포착이 가능함
 - 매출 유형 별 매출채권 회수프로세스 검토 ¹⁶⁾
 - 신규 구매거래처 선정 절차 검토 및 정기적인 벤더리스트 관리
 - 대여금, 선급금 거래 상대방의 실질 파악

15)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웨비나,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 임규동 파트너」, 2023.11

16) 거래처와의 채권 및 채무 정산 프로세스가 복잡한 매출유형의 경우 횡령의 기회 발생

II. CCG 아젠다 2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3) 대응방향

- 자금사고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Tone at the top', '취약점 진단 및 부정적발·예방 프로그램 개선'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부정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확고히 대응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 표명 및 실행이 요구됨
 - 현재 부정에 취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또는 외부기관을 통한 진단이 필요함
 - 부정예방 및 적발이 가능한 절차 개선이 요구됨

<표 10> 자금사고 유형별 대응방향¹⁷⁾

구분	설명
Tone at the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Message: 윤리경영의지 • 윤리교육 강화 • 내부신고제도 운영 • 실질적인 Action을 통한 지속적인 내부통제 개선과 모니터링 결과 공유 • 일관되고 단호한 처벌 및 합리적 성과 평가
취약점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점검 또는 외부진단을 통한 취약점 진단 • 설계의 취약점 점검 : 업무분장 미비/예외사항 처리 미비/물리적 접근통제 미비/모니터링 통제 미비 등 • 운영의 미비점 점검 • 부정 위험 요소 점검 : 일회성 거래처, 휴면계좌, 임시 계정 등
프로세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 예방 및 적발이 가능한 프로세스 개선 • 고위험군 프로세스에 대한 제3자의 주기적 모니터링 프로세스 구축 • 고위험군 직군에 대한 순환배치, 명령휴가제도 등 도입

17)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웨비나,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 임규동 파트너」, 2023.11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내부신고제도 운영 실효성 확보

- 자금사고 또는 회계부정 예방 차원의 대응방향에서 'Tone at the top'의 일환으로 내부신고제도의 성실한 운영과 관리가 강조되었음
- 글로벌 차원에서 부정의 주요 모니터링 수단은 전현직 임직원의 제보(42%)가 포함되며¹⁸⁾, 국내 금융감독당국에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회계부정 근본 처방의 일환으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과제로 포함하고 있음¹⁹⁾²⁰⁾
 -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노력을 천명함²¹⁾
 - 감면대상 확대: (기존)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 → (추가) 부정행위를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
 - 감경범위 확대:
 - ① (기존) 기존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1단계 감경 → 2단계 감경 및 검찰고발 제외
 - ② (기존) 기존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감경사항 없음 → 1단계 감경

<표 11>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 감면대상·감경범위 확대를 위한 3가지 조건²²⁾

구분	설명
조건 1	• 회계부정과 관련한 주도적 역할 등을 하지 않을 것
조건 2	•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조건 3	•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각목)

18) 2) ACFE (부정조사전문가협회), 「Occupational Fraud 2022: a report to the nations」, 2022

19)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2022.09.05

20)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2022.12.22

21,22)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23.07.20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 '22년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기 대비 25%p 증가하였고, 이 중 22건은 익명신고로 해당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표 12> 국내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²³⁾

(단위: 건,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19	44	93	64	72 (17)	92 (14)	115 (22)
전기대비 증가율 (%)	△13.6	131.6	111.4	△31.2	12.5	27.8	25.0

(): 익명신고 접수 건

- 2023년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행위에 관여하였다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
-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 1,340만원(건당 평균 4,26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

<표 13> 국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²⁴⁾

(단위: 건, 만원)

구분	'08년~'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월~9월)
지급건수	10	1	2	12	5	2	5
지급금액	11,360	330	11,940	40,840	22,860	5,650	21,340
평균지급금액	1,136	330	5,970	3,403	4,572	2,825	4,268

23,24) 금융위원회,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2023.10.25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 추후 국내 고객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내부신고 유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전보상의 비례 강화가 권고됨
 - 미국의 경우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로 회사에 100만 USD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의 10~30%를 내부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명문화 되었으며²⁴⁾, 2023년 5월 현재 최대 보상금액은 2억 7,900만 USD에 달함²⁵⁾
- 특히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가 운영상에 있어 보장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부감사법 제47조 제1항)
 -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부감사법 제43조, 제47조 제1항)
-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대한 감독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다음의 사항으로 정리됨

<표 14> 내부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²⁶⁾

구분	Check
• 감사위원회는 내부신고시스템이 어떻게 평가되고 테스트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
• 내부신고의 기밀성, 정확성 및 적시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독립적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고위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신고된 경우 해당 건이 경영진에게도 보고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 감사위원회는 해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고경영진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 전사적 차원의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정기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고 있습니까? 커리큘럼에는 윤리강령, 핫라인 또는 내부신고시스템 관련 교육을 포함합니다.	√

24) 1934 증권거래법 §21F

25) SEC Press Release, 「SEC Issues Largest-Ever Whistleblower Award」, 2023.05.05

26) Deloitte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Questions for audit committees to consider」, 2022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결언

-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소주제를 가지고 유관사항을 논하였음
 - ‘부정’의 특성 및 ‘부정’에 취약한 기업유형, 부정 발생의 3요소, KOSPI 200 기업의 ‘부정’ 안건 처리 현황, 외부감사법 상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개선, 자금사고의 기법과 대응방향, 내부신고제도 운영 실효성 확보
- 감사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회계부정 등의 징후를 모니터링 하는 최상위 지배기구이며 부정이 발견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면책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함
- KOSPI 200 기업의 안건 처리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조사와 대응의 발생은 빈도가 높지 않으나 한번 발생하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전예방 차원의 절차 수립 및 성실한 운영 감독이 강조됨
 -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 마련 및 최고경영진에 대한 내부신고시스템의 실효적 운영 감독
 - 최고경영진과 내부통제 활동의 변화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함
- 국내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부정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음

<표 15> 부정방지를 위한 글로벌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²⁷⁾

구분	Check
• 조직 내 부정 리스크 평가 수행 수준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 경영진 통제권의 남용 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
• 경영진의 잠재적 부정 리스크 고려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개발되고 평가 프로세스는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 조직의 인재모델과 직무책임의 변화가 적절한 업무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
• 식별된 부정 리스크가 통제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
• 부정의 예방통제와 적발통제의 설계 및 운영수준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

27) Deloitte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Questions for audit committees to consider」, 2022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별첨 1]

- 문의사항: 자금사고 및 횡령 등 부정사례를 회사 차원에서 적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²⁸⁾
- 회신사항

자금사고 및 횡령 등 부정사례를 회사 차원에서 적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먼저 현재의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As-Is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점검의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실제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정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특이사항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통제 설계의 경우 1) 기본적인 업무분장의 미비점 존재 여부 확인, 2) 예외사항에 대한 내부통제가 부재하거나 변경된 프로세스를 반영하지 못한 내부통제가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3) 물리적 접근통제의 미비 확인(인감, 통장, OTP, IT 접근 권한 등) 4) 모니터링 통제의 미비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위험이 높은 거래 유형이나 계정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휴면계좌의 사용여부, 부도나 휴폐업 거래처에 대한 자금 지급 여부, 신규 거래처에 대한 자금 거래(1회성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정행위자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방법들을 보면 문서위조 또는 데이터를 변조 및 공모 등의 방법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부정 징후들 예를 들면 이상거래 패턴이라든지 또는 임직원의 이상 행동 등을 탐지해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추출되게 하고 추출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추가적인 심층 조사나 테마 감사 등을 통해서 증거 부정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부정을 적발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자는 철저하게 증거를 은닉하기 때문에 부정이 발견되는 데까지 종장기적으로 몇 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부신고(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부정을 발견하게 된 계기 중 가장 높은 비율로(42%) 내부신고제도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내부신고제도는 임직원뿐 아니라 거래처, 제3자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어야 되고,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항들이 내외부적으로 공유될 때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8)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웨비나 온라인 질의사항,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 임규동 파트너」, 2023.11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별첨 2]

□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 양식 예시²⁹⁾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합니다.

2. 본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감사인인 xx회계법인으로부터 20xx년 x월 xx일 당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xx년 x월 xx일 외부전문가 xxxxx을 선임하였습니다.

〈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내용 기재 (예시) 〉

- 1) 회계부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래내역 및 관련 계정과목
- 2) 감사인이 회계부정을 인지하게 된 경위 (감사과정에서 확인,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
- 3)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평가내용

3. 상기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는 20xx년 x월 xx일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되었습니다.

*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 20xx년 x월 xx일 ~ 20xx년 x월 xx일(총 xx일)

본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자에게 상기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20xx년 x월 xx일 요구하였으며, 당사의 시정조치 결과는 20xx년 x월 xx일 제출되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검토 결과, 관련 조사 및 조치는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 요약 기재 (예시) 〉

- 1)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2)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 판단
- 3)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여부 식별
- 4)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 5)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별 첨〉

1.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문서
2.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조사 결과보고서
3.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20xx년 x 월 x 일
주식회사 x x x (감사 설치 회사) 감 사 x x x (인)
주식회사 x x x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위원장 x x x (인)

보고개요

- 보고 주체: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보고 시기: 즉시(최종 조사보고서 발행 직후)
- 보고 대상: 외부조사 및 내부조사(별도 보고 양식)

보고내용: 조사개요

- 외부감사인의 통보 일자
-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조사대상 이슈, 인지 경위, 중요성 판단)
- 외부조사인 선임 일자 및 조사기간

보고내용: 조사결과및시정조치 결과

- 외부조사인의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일자
- 시정조치 요구 일자 및 시정조치 결과 제공 일자
- 조사결과/시정조치 내용의 요약과 이에 대한 내부감사의 판단 (적절성, 충분성)

보고내용: 별첨

-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 문서
-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조사 결과보고서
-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2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2023.07.17

II. CCG 아젠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별첨 3]

□ 회계부정을 포함한 위법행위 발생 시 양형 기준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포함

구분	항목	내용
형사책임과 행정처벌	• 징역 - 외부감사법 제39조	• 10년 이하 징역
	• 과징금 - 외부감사법 제35조	• 회사: 분식금액의 최대 20% • 임직원: 회사 과징금의 최대 10% • 외부감사인: 감사보수의 최대 5배
	• 몰수 - 외부감사법 제45조	• 위반하여 얻은 이익 몰수
	• 신분제재 - 외부감사법 제29조	• 해임 권고,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 벌금 - 외부감사법 제39조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민사책임	• 연대책임 - 외부감사법 제31조	• 외부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배상을 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도 연대하여 배상
	• 손해배상 - 자본시장법 제162조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혹은 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요약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본고는 KOSPI 200 기업의 FY2021- FY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과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 분석결과, FY2021- FY2022 모두 '손상', '수익인식', '연결/지분법'이 상위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영진 판단 등 추정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항목 또는 감사위험이 높거나 복잡한 회계처리로 인해 유의적인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이 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임
-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 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주의깊게 살피고,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해야 함

논의 배경

-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¹⁾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수행절차 및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술되도록 하여 투자자들의 이해도 향상과 합리적 투자판단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됨
 -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수주산업 대상으로 핵심감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였고, 2018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핵심감사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적절히 선정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며,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외부감사인의 결정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 260(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10은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로서 지배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사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할 것을 요구함(2017)²⁾

1) 회계감사기준 260(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기업의 전략방향 및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지배기구로 정의함

2) 금융위원회,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2017.12.20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감사위원회는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수행절차에 대한 충실한 기재를 감독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함

<표 1> 핵심감사사항 선정절차 및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내용
[1단계]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 불확실성 • 당기의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2단계] 외부감사인의 유의적 주의 필요사항 파악 및 핵심감사사항 선정
[3단계]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 본고는 KOSPI 200 기업의 FY2021- FY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과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2021~2022 사업연도 말 KOSPI 200 기업의 감사보고서³⁾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의 분류기준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석기준⁴⁾을 적용함

3)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4) 금융감독원,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2021.12.01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표 2> 2021~2022년 사업연도 KOSPI 200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현황

핵심지표	2022년		2021년		2021-2022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변동률	비율 변동률
손상	107	29.6%	138	35.4%	-22.5%	-16.2%
수익인식	86	23.8%	94	24.1%	-8.5%	-1.2%
연결/지분법	43	11.9%	42	10.8%	2.4%	10.6%
공정가치 평가	34	9.4%	26	6.7%	30.8%	41.3%
기타	20	5.5%	13	3.3%	53.8%	66.2%
대손충당금	17	4.7%	13	3.3%	30.8%	41.3%
법인세	14	3.9%	11	2.8%	27.3%	37.5%
사업결합	10	2.8%	11	2.8%	-9.1%	-1.8%
충당부채	9	2.5%	10	2.6%	-10.0%	-2.8%
재고자산	7	1.9%	13	3.3%	-46.2%	-41.8%
특수관계자	7	1.9%	9	2.3%	-22.2%	-16.0%
개발비	5	1.4%	6	1.5%	-16.7%	-10.0%
리스	2	0.6%	4	1.0%	-50.0%	-46.0%
총계	361	100%	390	100%	-7.4%	0.0%

- 분석결과, 2021년-2022년 모두 '손상(29.6%, 107개)⁵⁾, '수익인식(23.8%, 86개), '연결/지분법(11.9%, 43개)' 이 상위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수반되는 항목들이 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임
- 손상 항목의 경우, 손상평가시 회수가능액 측정에는 할인율, 성장률 및 미래현금흐름 등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치가 수반되며,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에 따라 추정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사료됨
 - 손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⁶⁾, 유/무형자산의 손상평가, 수주산업의 경우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의 순으로 빈도가 높음

5) 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를 손실로 반영 (예시: 영업권 손상인식, 유형자산 손상인식, 투자주식 손상인식 등)

6)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은 현금창출단위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가 수행되나,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함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다수의 기업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이 선정되었으며,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손상검토를 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투자주식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가 존재하므로 감사 수행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선정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은 금융감독원의 2022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포함된 항목임
- 수익인식 항목의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정보로 기업의 경영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항목이며, 계약구조가 복잡한 경우 수익인식 시점, 수익인식 방법, 수익인식 금액 등에 높은 수준의 경영진 판단을 요구하므로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음
 -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라 수익인식의 형태가 다르지만, KOSPI200 대부분의 기업에서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수익의 발생사실이나 기간귀속이 주로 선정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새로운 유형 또는 특수한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의 적정성이 선정되고 있음
 - 개정 수익인식기준(K-IFRS 제1115호)⁷⁾이 '18년에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의 2019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항목으로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이 선정된 바 있고,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으나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⁸⁾된 것도 다수 선정된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됨
 - 동 기준서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19, '23)⁹⁾,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않거나('20¹⁰⁾, '24¹¹⁾), 발생사실이나 기간귀속이 부적절('18, '21)¹²⁾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익인식은 거의 매년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포함되는 사항임

7) 재무제표 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함

8) 금융감독원,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2.06.27

9) 신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

10)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11) 장기공사수익

12) 국외매출회계처리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연결/지분법 항목의 경우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¹³⁾ 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지분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이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므로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연결/지분법' 회계처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연결/지분법'은 그 특성상 '사업결합' 및 '손상'과 연관되며, 사업결합의 경우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손상의 경우 기 인식된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의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것임
 - KOSPI200 기업은 규모 및 사업환경을 고려시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이 재무제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부적절한 회계처리시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시사점 및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 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고¹⁴⁾,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해야 함
- 금융당국에서는 매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항목의 사전예고를 통해 해당 영역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는 당해 중점심사 항목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과 논의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중점심사(테마심사) 결과에 따라, 사전예고한 회계이슈 중 지적률이 높은 항목으로 '무형자산 인식·평가', '비시장성자산 평가',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을 발표한 바¹⁵⁾, 감사위원회는 해당 항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2023년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기준서 개정에 따라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절히 적용하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음

1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1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22.3.30)에 따르면, '21년 기업결합은 건수와 금액이 각각 전년 대비 28.7%(248건) 및 66%(138조 원) 증가함

14)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3

15) 금융감독원 「사전적 회계감독을 위한 테마심사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2022.07.21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표 3>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선정 현황 (3개년)

구분	내용
2024년 ¹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전환사채(CB) 콜옵션 • 장기공사수익 • 우발부채 공시
2023년 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실재성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사업결합 회계처리
2022년 ¹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영업이익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인 핵심감사사항 선정시의 고려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외부감사인과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음

<표 4> 회계감사기준서에서 제시하는 핵심감사사항 선정시의 고려사항¹⁹⁾

구분	내용
중요왜곡표시위험 또는 유의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추정 불확실성 및 경영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와 이와 관련된 유의적 경영진의 판단이 포함된 분야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기간 중에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16) 금융감독원,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3.06.14

17) 금융감독원,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2.06.27

18) 금융감독원,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1.06.28

19)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9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선정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표 5> 핵심감사사항 선정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구분	내용
핵심감사사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감사범위 및 시기 논의 시,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논의할 수 있음(업무 상황에 따라 적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²⁰⁾ • 전기 핵심감사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유용함²¹⁾ •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이 선정하고, 감사(위원회)는 선정된 핵심감사사항과 그 근거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논의함²²⁾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논의하고 핵심감사사항 선정에 고려 가능함²³⁾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초안을 수령하여 핵심감사사항이 어떻게 기술될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필요 시 설명 요청 가능함²²⁾ • 감사보고서 상의 핵심감사사항이 공시로서 유용할지 여부를 고려함²²⁾

20)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60

21)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11

22)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61

23)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9(c), A25, A26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요약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23.10월, '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추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함¹⁾
- 배당절차 개선 등 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과 시장 참가자의 요구,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이 반영됨
- 제출시한이 '24년 5월 말경인 '24년 제출 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24년도 제출이 의무화되어 제출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

경과 및 개정 배경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임²⁾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
- '17년 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율공시 형태로 최초 도입된 이후 '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22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됨

<표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구분	'17년	'19년	'22년	'24년	'26년
의무공시 대상	자율공시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 이상	자산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전체

1)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3.10.12

2)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2.3.4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경과 및 개정 배경 (계속)

- 한국거래소는 '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 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20년, '22년 두 차례 개정함³⁾
- 이번 개정은 '24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어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진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진함
- '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결과 총 366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함

<표 2> 연도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현황

구분	자율공시		의무공시				
	'17년	'18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자산총액 1조원 이상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금융회사	39	40	39	40	40	41	39
비금융회사	31	55	161	171	175	304	327
전체	70	95	200	211	215	345	366

- 2조원 이상 기업 및 1조원~2조원 기업을 합산한 '22년 기재충실도는 75.9%임⁴⁾
 - '21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는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한 신규 공시항목 추가 및 일부항목 기재방식 변경 등에 기인한 것임

<표 3> 보고서 기재충실도 평균 현황

구분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2조원
	'21년	'22년	'22년
전체	78.8%	76.9%	74.2%

3)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3.10.12

4)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 발표」, 2022.12.13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개정 내용

- '23년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 G20/OECD 지배구조원칙('23년 개정) 및 한국 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22년 개정시행)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동향을 참조하였으며,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함

1) 세부원칙

<표 4> 세부원칙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내용	원칙번호
배당예측 가능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 관련 표준정관 개정⁵⁾에 따른 정관 개정여부 현금배당 관련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先)배당액 결정, 후(後)배당기산일'의 배당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공시하도록 의무화 	1-4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내역, 해외투자자 소통위한 행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미등기 포함)참석여부, 영문공시 비율을 포함하여 진술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안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 노력 및 내역 공시 	1-2 1-4 2-1
메자닌 채권 등을 통한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조달수단은 CB, BW, EB 등 주식 전환가능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등을 포함 일부 기업이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거나 지배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의견 수렴 조달과정에서의 주주의견 수렴정책 공시 의무화 	2-3
이사회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 및 이사회 내 동일 성별 구성여부 기재, 미준수 사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회내 성(性) 다양성 확보 법제화⁶⁾ 성별, 연령 및 경력 등 다양성 확대 	4-2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 개별평가에 연동한 보수정책 마련 여부 보수 관련 정책의 공개 여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남용방지 정책 공시 	7-1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익편취/부당지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대 1차적인 당국의 판단(기소 및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까지 공시 	4-4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 13조, 제45조 제2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0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 핵심지표

- 법령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지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 정책 개편 및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하도록 일부 핵심 지표를 정비함

<표 5> 핵심지표 주요 개정사항

신설항목	삭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3) 보고서 형식체계

- 보고서 체계에 있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시된 항목을 단순 기술하도록 한 반면, 개정 가이드라인은 각 원칙의 준수 여부를 100자 이내로 간략 기술하는 방식으로 반영함
- 세부원칙 준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세부 정책 시행 여부를 'O/X'로 기재하도록 개편함
 - XBRL 개발에 따라 자동 DB화 가능함

향후일정

- 한국거래소는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24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 추진 계획을 밝힘
 -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조기에 정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 예정임 (제출시한: '24년 5월말)
 - 공시기한 미준수, 허위공시, 공시항목 오기재·누락 시에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할 것임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별첨]

<표 6> 핵심지표 주요 개정사항

구분	'22년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지표	'23년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지표	비고
주주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현행과 동일)
	• 전자투표 실시		(현행과 동일)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행과 동일)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현행과 동일)
	• (신설)	•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상법 유권해석 등 배당절차 관련 법제 개편 반영
이사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현행과 동일)
	•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의미를 명확히 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
	• 집중투표제 채택		(현행과 동일)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현행과 동일)
	• (신설)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이사회 구성원에 다양성 요소를 중시하는 글로벌 추세 반영
	•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삭제)	법령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짐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표 6> 핵심지표 주요 개정사항 (계속)

구분	'22년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지표	'23년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지표	비고
감사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실효성이 낮은 점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현행과 동일)

IV. 주요 규제 동향 ②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진행 실태분석 결과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요약

- 금융감독원은 '23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상황 기재를 중점점검하고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함¹⁾
- 점검대상 1,047사 중 작성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516사(49%)였고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기재가 가장 미흡(미흡률 38%)하였음
- 작성기준에 미흡한 531사에 중점점검 결과 및 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하여 보완토록 안내하고 특히, 기재부실이 심각한 회사의 경우 향후 사업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재점검 실시 예정

점검개요

- 최근 3년('21.1.1 ~ '23.6.30)간 정관에 사업목적용 추가·삭제·수정 내역이 있는 상장사 1,047사를 대상으로 점검
 - 유가증권 326사, 코스닥 721사
- 신사업 추진경과 공시 의무화 등 공시서식 개정내용(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3-7-2)에 대한 작성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함
 - 기재내용의 진실성 검증이 아닌 작성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

점검항목

- 점검항목으로는 ①사업목적 현황(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3-7-2 제1항) ②사업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제2항), ③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제3항)이 있음²⁾
- 점검항목별로는 '③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②사업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의 미흡률이 각각 38%, 35%로 높았음
 - '①사업목적 현황'은 현재 회사 사업목적용을 단순 기재하는 항목임에 따라 대체로 양호(미흡률 2%)

1) 금융감독원,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진행 실태분석 결과」, 2023.11.1

2)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23.10

IV. 주요 규제 동향 ②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진행 실태분석 결과

점검결과

- 점검대상 1,047사 중 작성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516사(49%)이고, 나머지 531사(51%)는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 유가증권(47%)과 코스닥 상장사(52%)간 미흡률 차이는 크지 않음

<표 1> 중점점검 결과

(단위: 사, %)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점검대상	326	(100)	721	(100)	1,047	(100)
양호	173	(53.1)	343	(47.6)	516	(49.3)
미흡*	153	(46.9)	378	(52.4)	531	(50.7)
① 사업목적 현황	4	(1.2)	15	(2.1)	19	(1.8)
② 사업목적 변경내용	90	(27.6)	279	(38.7)	369	(35.2)
③ 사업 추진현황	127	(39.0)	275	(38.1)	402	(38.4)

*점검항목(①~③) 중복 제거

주요 신사업 추진 실태분석

- 최근 3년('21.1.1 ~ '23.6.30)간 증시에서 이슈된 주요 7개 테마 업종과 관련된 신규 사업목적을 추가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함
 - 사업목적 추가가 신사업 진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합병 소멸법인의 사업 목적 추가, 기 영위 사업 관련 사업목적 추가 등) 제외함
- 테마주로 알려진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21~'22년)한 233사 중 추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모두 있는 회사는 83사(36%)이며, 일부 사업이라도 매출실적이 있는 회사는 47사(20%)에 불과함
 - 추가한 신사업 중 일부 사업만 추진실적이 있는 회사까지 포함시 104사(45%)임
- 미추진기업 129사(55%)는 추진기업 대비 다년간 영업손실,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고,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사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가 다수임
 -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급등시 최대주주 관련자가 CB 전환주식 매도 및 사업 추진 철회 등 허위 신사업 이용 부정거래 혐의 기업 일부가 발견됨

IV. 주요 규제 동향 ②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진행 실태분석 결과

신사업 추진경과 관련 공시기준

1) 사업목적 현황

- 공시서류작성기준일('23.6월말) 현재 정관상 명시된 사업목적 현황 기재 및 실제 사업영위 여부 표기

구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판매업	영위
2	생산 및 제조업	미영위

2) 사업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

- 공시대상기간('21.1.1 ~ '23.6.30) 중 사업목적 변경(추가수정삭제) 내역 기재

- 표 하단에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①사업목적 변경 사유, ②변경 제안 주체, ③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포함

구분	변경일	사업목적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20XX.X.X	-	7. 000 생산 및 제조업
수정	20XX.X.X	5. 000 판매업	5. △△△ 판매업
삭제	20XX.X.X	9. 000 유통 및 도소매업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진행 실태분석 결과

3)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 공시대상기간(21.1.1~23.6.30) 중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에 대해, 1) 사업개요, 2) 사업 추진현황, 3) 추진 관련 위험, 4)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5) 향후 추진계획, 6) 미추진 사유를 기재
- 단, 5) 향후 추진계획과 6) 미추진 사유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항목	내용	
5)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진행단계 및 각 단계별 예상 완료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추진 예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6) 미추진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 및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 존재여부 및 추진 예정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변경 내용 	

향후계획

- 작성기준에 미흡한 531사에 중점점검 결과 및 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하여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시 보완토록 안내 예정
 - 기재부실이 심각한 회사의 경우 향후 사업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예정
-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적발시 엄중 조치할 예정

IV. 주요 규제 동향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 ('23.11.15~12.5)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요약

-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함¹⁾
- 개정안은 11월 15일(수)~12월 5일(화) 동안 사전예고 실시 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임
- 제도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개정 배경

-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기준 및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함
 -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규제는 대폭 개선하되, 회계 투명성은 유지해 나가고자 '중소기업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함²⁾
 -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고시하였음('23.5)³⁾
 -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⁴⁾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함⁵⁾

1)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2023.11.15

2)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규제는 대폭 개선하되, 회계투명성은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2022.10.5

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7호, 2023.5.2

4) 금융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2023.6.12

5)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3-52호, 2023.9.14

IV. 주요 규제 동향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주요 개정 내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

-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신설함
 -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함

<표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마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절차: ① 재무보고위험 식별 → ② 통제의 식별 → ③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 → ④ 평가결과 문서화 •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보고 절차: ① 미비점에 대한 평가 → ② 미비점에 대한 조치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 ④ 운영실태 보고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함
기타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하여 평가·보고기준 총칙에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통제, 통제위험, 통제실패위험, 독립적인 평가, 상시적인 모니터링, 변화관리체계 등 20개를 총칙 문단2에 일괄 규정 •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대상 사업 단위를 명료하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사업단위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외 사업단위의 부문정보를 운영실태보고서에 공시함에 있어 영업이익 정보를 제외 (평가·보고기준 문단 14)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서식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취약점 관련 시정조치 계획에 감리 관련 시정조치 계획 포함 (평가·보고 기준 문단 25 사. 단서 신설) •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하여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평가·보고 기준은 '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정 • 이관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개 사업연도에 한해 현행 준거기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 및 보고 수행 가능

IV. 주요 규제 동향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2)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을 마련

<표 2>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산업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의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함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업 등 수주산업, ② 은행·저축은행업, ③ 보험업, ④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25년 1월 1일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②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③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④ 운수 및 창고업, ⑤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⑥ 소프트웨어 개발업, ⑦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규정 산업전문성 감사인 지정절차는 ① 지정기초자료 제출(회사, 감사인→금감원) → ② 산업전문성 분류 → ③ 지정감사인 통지(금감원→회사, 감사인) → ④ 재지정신청(회사, 감사인→금감원)임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전문가의 분류기준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등

IV. 주요 규제 동향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3)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

*①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 외감규정(제12조 제3항)의 개정으로 수치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

- 변경된 경력기간별 점수를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함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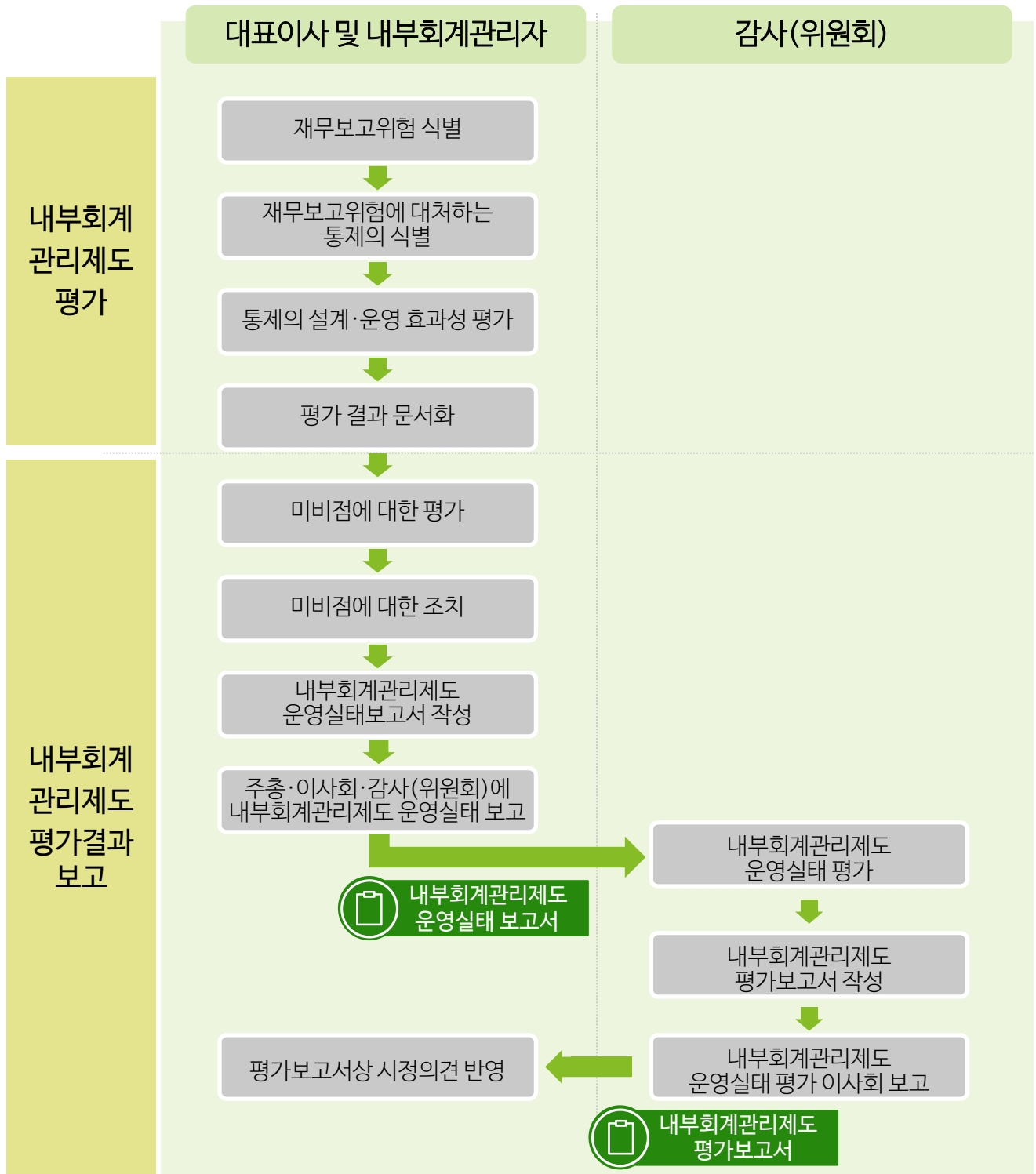
-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11월 15일(수)부터 12월 5일(화)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임
- 제도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개선과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IV. 주요 규제 동향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별첨]

<그림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프로세스



V. FAQ

금융사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저는 금융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방안은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간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나요?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각각의 구별되는 역할이 궁금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방안'은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권고함¹⁾
 - 기존에도 내부통제위원회는 있으나 CEO 및 관련 경영진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산하 조직으로 금번에 권고되는 내부통제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다름
 - 현재 대부분 은행의 내부통제 업무는 준법감시인 산하 업무이거나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에서 병행하는 실정임
-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 전략, 임직원 윤리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책무구조도 적용대상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됨
- 다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여러 부담을 고려하여 금융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운영이 허용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²⁾
 - 감사위원회의 주요 감독영역은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감독, 리스크·내부통제 감독, 내부감사 감독 및 ESG 감독으로, 다양한 감독영역 중 하나로 내부통제 감시 역할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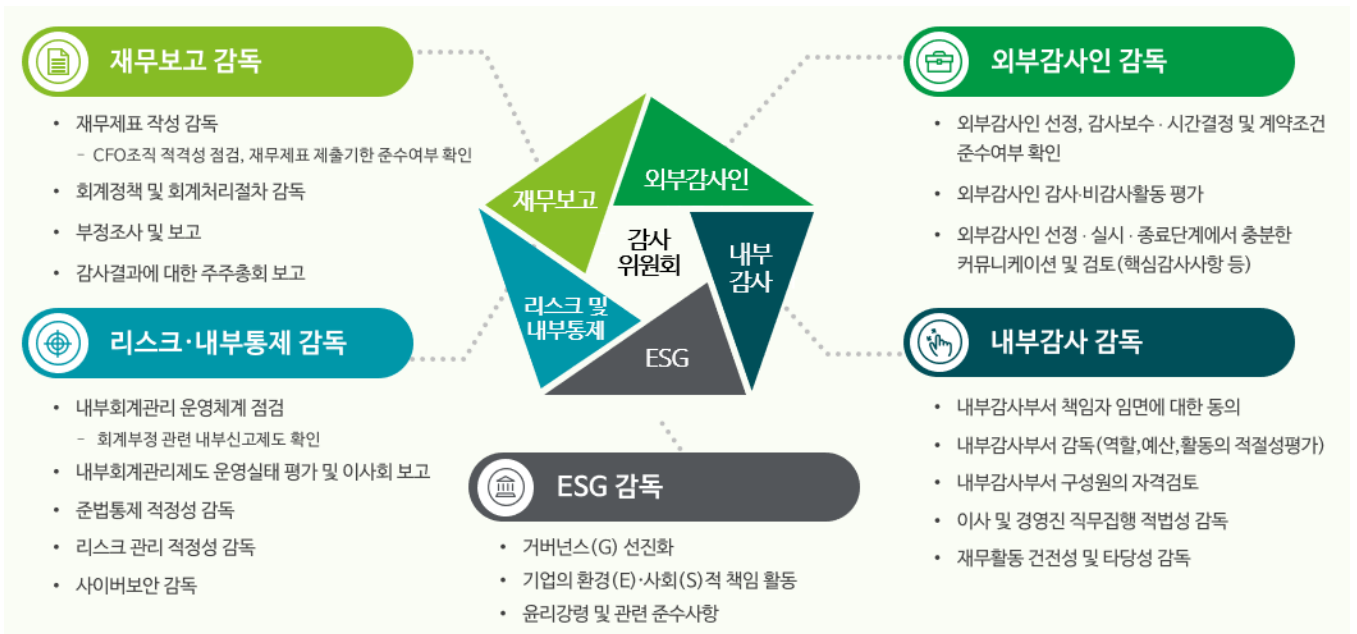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3.06.22

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별첨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2023.06

V. FAQ

금융사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그림1> 감사위원회의 주요 감독 영역 예시



- 이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명확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V. FAQ

사외이사의 책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당사는 최근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규제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주주들이 당사를 상대로 당사의 감사위원 3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청구하였고, 당사가 이 소를 제기하지 않자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동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지시하거나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까?

- 사외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됨
 - '회사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책임을 짐¹⁾
 -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 해태시 그 이사는 제3자(주주,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며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책임을 짐²⁾
- 최근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음
 - 대법원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10명의 이사회에게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회 대표이사, 사내이사과 동일한 감시의무를 부담함
 - 모든 이사회가 적어도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의 감시의무를 부담함
 - 이사회는 보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감독하는 것으로는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 또는 사전교육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1) 상법 제399조

2) 상법 제401조

V. FAQ

사외이사의 책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대법원 판례(2022)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³⁾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생략)...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생략)...

이 사건 당시 A사는 윤리강령, 윤리세칙, 기업행동강령 등을 제정해 시행한 상태였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교육, 건설 하도급 공정거래법 교육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단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 지침 또는 사전 교육에 불과할 뿐, 입찰담합 등의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라고는 볼 수 없고, 당시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입찰담합 시도를 방지, 차단하기 위하여 그 어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이나 내부통제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사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적극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었더라도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구축·작동 노력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윤리강령, 기업행동강령 등을 제정·시행하거나 임직원 대상 관련법령 및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여도 위법행위가 의심·확인되는 경우, 해당 교육은 단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 지침 또는 사전교육에 불과할 뿐,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내부통제시스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임

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